

분양권 명의변경(매매·증여) 안내

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

분양권 명의변경(매매·증여)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**명의변경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님께서**는 본 안내문을 **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 명의변경을 신청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건본주택 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**명의변경 방문일시는 사전예약제(전화예약)로 운영**할 예정이며, **사전 방문예약 미신청시 명의변경 신청 접수가 불가**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▣ 분양권 명의변경 일정 및 장소

- 일정 : 2024년 9월 25일(수) ~ 9월 27일(금), 3일간 | 10:00 ~ 16:00 (점심시간 제외)

- 장소 : 「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」 건본주택 |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

- 문의 : ☎1533-7336

※ 방문일시는 사전예약제(전화예약)로 운영되오니 반드시 방문예약 기간에 전화예약으로 방문일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전 방문예약 미신청시 명의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.

※ **중도금 대출승계 후 대출승계 동의서 또는 대출상환 영수증을 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▣ 방문일시 사전예약 안내

- 예약방법 : 방문일시 **전화예약**(☎1533-7336)

- 예약기간 : 2024년 9월 9일(월) 10:00 ~ 9월 24일(화) 16:00

※ 시간대별 방문예약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▣ 분양권 명의변경(매매·증여) 절차

매매·증여 계약 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(용인시 처인구청 민원지적과) ⇨ **중도금 대출승계**(우리은행 해당지점, 대출신청자에 한함) ⇨ **분양권 명의변경 신청**(건본주택)

1. 양도인·양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(증여일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후 용인시 처인구청 민원지적과 검인 필요)

2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수령(용인시 처인구청 민원지적과, 031-324-5134)

3.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

※ **중도금 대출승계 시 양도인·양수인 대리인 신청 불가**

※ **분양권 명의변경 신청 시 양도인(대리인 불가) 및 양수인(대리인 가능)이 방문하여야 신청 가능**

※ 공동명의의 경우 계약자 구비서류를 각각 준비하시고 함께 방문하여야 신청 가능

▣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양도인 (매도인·증여인)	- 공급계약서, 발코니 확장 시공 계약서, 유상옵션 계약서 원본 - 매매계약서(또는 증여계약서) -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* [증여시] 검인된 증여계약서 - 대출승계 동의서 또는 대출상환 영수증 *중도금 대출신청자에 한함 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 *1개월 이내 발급분 * [용도] 부동산 매도용,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/ 본인발급분 - 주민등록등본 1부(상세) *1개월 이내 발급분 -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불필요) - 신분증 - 정부수입인지 원본 * [매매시] 공급계약용 15만원, 발코니 확장 시공 계약용 2만원 [증여시] 불필요
양수인 (매수인·수증인)	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 * [용도] 권리의무 승계용 / 본인발급분 / 1개월 이내 발급분 - 주민등록등본 1부(상세) *1개월 이내 발급분 * [배우자 분리세대 증여시] 증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증여시) *1개월 이내 발급분 -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불필요) - 신분증 - 정부수입인지 원본 * [매매시] 공급계약용 15만원, 발코니 확장 시공 계약용 2만원 [증여시] 불필요 - 계약자 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, HUG보증 개인정보동의서(건본주택 비치)
대리인 (분양권 명의변경시)	- 양도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(양도인 본인 방문) - 양수인의 대리인 방문시 양수인 구비서류, 인감증명서 1통 추가 *인감증명서 : [용도] 부동산계약 위임용, 양수인 본인발급분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- 신분증(대리인) - 위임장(건본주택 비치)

▣ 기타

-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미납시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.

- 분양권 명의변경(매매·증여) 신청 후 명의변경이 완료된 공급계약서 수령 가능일은 양수인 본인에게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
- 분양권 명의변경(매매·증여)에 따른 관련 세금(양도소득세, 증여세 등)에 대하여 신고·납부의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
- **건본주택 폐관에 따라 향후 분양권 명의변경, 분양금 납부 확인 등의 업무는 두산건설 본사 콜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.**

(두산건설 본사 콜센터(☎02-3441-1700),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)